

# 프로그램저작권침해 벌칙강화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내용 해설 —

신 각 철 (법제처 법제연구원)

정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법률」을  
지난 1월 4일에 공포했다. 이번호에서는 국내 컴퓨터프로그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글은 필자  
소속기관과 무관한 개인의견임을 밝힌다.)

— 편집자주 —

### 「프로그램법」 개정의 배경

정부(과학기술처)에서는 지난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을 위하여 국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법예고 한 바(93. 1. 7 과기처 공고 1992-147호) 있었으며, 학계·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검토한 다음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정기국회(제165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법률」을 성립하였고,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12호로 공포하였다.

개정이유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량이 낮아 벌칙의 실효성이 낮고 프로그램 분쟁에 대한 조정기구가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점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

위의 개정배경을 요약하여 다시 살펴보면, 첫째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량이 낮아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전의 프로그램법 규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시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사람의 값비싼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판매하여 상당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고서, 300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때문에 프로그램저작권침해에 대한 별치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었다.

둘째로는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조정기구가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웠다.

프로그램 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는 달리 그 내용과 구조 및 권리발생관계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프로그램법에서는 「저작권법」에서와 같은 분쟁조정기구가 없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는 길 밖에 없어 소송절차상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 소요하게 되는등 불편이 많았었다.

셋째로 국제적인 저작권보호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UR협정의 타결등 지적소유권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보호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분야는 특허권, 상표권등 다른 지적소유권보다도 가장 논란이 많은 점등을 감안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보호강화 등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 주요 개정내용과 해설

#### 법인등 업무상 창작프로그램의 공표요건 삭제(법 제7조)

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

은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이나 근무규칙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인정한다.

중전의 프로그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①법인등의 기획하에 ②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③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④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을 ⑤계약이나 근무규칙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하였다. 즉 위의 법인등의 저작자 인정요건중에 ④의 법인명의 공표요건을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였다. 이 「공표요건」은 당초의 법 제정 당시부터 불합리한 규정으로 논란이 되어 왔었다.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프로그램법 제8조 제2항) 즉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은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는 무방식주의의 원칙에 법 제7조에서 「공표해야 저작권이 인정된다」라는 규정은 정면으로 모순·저촉되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또한 법인등 업무상 창작프로그램에 대한 「공표요건」의 설정은 사용자(기업주)와 종업원(개발요원)간에 저작권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공표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호할 수 없는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미국등 외국의 경우는 입법 당초부터 공표요건을 넣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이번에 개정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한 입법조치였다고 보겠다.

**프로그램대여권 인정(법 제16조의2)**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당해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가진다.

위의 규정은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프로그램대여권 인정제도는 이미 UR협정에서도 타결된 제도로서 외국의 경우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현행 프로그램법 제2조제8호에서도 ‘배포’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배포권속에 실제로는 대여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종래의 관행상 배포권을 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양도, 판매 등 발행하는 수단으로 해석되어 왔었다. 이번에 「대여권」을 신설하여 별도로 명문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프로그램 저작자의 동의없이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개정 내용의 벌칙규정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공표,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또는 발행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와 수입등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규정하고, 대여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벌칙규정 제34조 내지 제37조 참조).

따라서 「대여권」을 배포권의 내용에 포함시켜 확대해석 적용한다면 3,0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도 가능하겠지만, 이 법률의 벌칙규정에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행위를 한 자도 처벌한다」라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앞으로 법원에서의 판결이 주목된다.(프로그램저작물의 대여제도에 관해서는 「정보화사회」(1993. 3. 19)에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업무상 악의사용자 처벌(법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급한 자가 이를 컴퓨터에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도 당해 프로그램의 침해행위로 본다

위의 내용은 프로그램저작권을 현실적으로 복제, 배포, 공표, 발행 등으로 침해행위를 하는 자만을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자로서 처벌하였던 종전의 규정(법 제34조)에 새로 추가 신설하여, 현실적 침해자가 아닌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자까지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처벌범위의 확대이다.

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불법복제행위자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이란 사정을 알면서 업무상 사용한 자까지 즉 악의의 최종사용자(End user)까지 처벌하여야 한다는 세계각국의 추세와 관련업계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법하였다. 실제로 불법복제물의 수요자가 없을 경우 불법복제행위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불법복제행위가 만성적으로 이루어졌고,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투자비용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투자를 기피하였으며 이것이 프로그램 산업발전에 암적인 요인이 되어왔던 것도 사

실이었다.

앞으로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법복제물이라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는가 아니면 「불법복제물이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취득」했는가 라는 입증문제에 관하여 저작권자와 사용자간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잘못하면 선의의 취득자까지도 악의의 취득자로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선 다음호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물론 악의취득자 처벌규정은 「저작권법」(제92조)에도 있지만, 일반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은 불법복제여부의 판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악의의 최종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업무상」 사용하였을 때에만 처벌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연구논문작성용 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연구·분석용으로 사용될 경우는 업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학습용프로그램이나 게임용프로그램의 경우 주된 사용장소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비업무용」으로 사용된다고 볼 때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법 제29조)

종전에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개편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하고 프로그램저작권등의 분쟁에 관한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동안 프로그램법에서는 분쟁에 대한 「조

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함에 따라 당사자간에 불화가 발생하고 많은 경비와 기간이 소요되어 권리보호가 미흡하였고, 서로가 피해를 입어왔었다.

분쟁의 「조정」이라 함은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로 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당사자들에게 서로 양보·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함으로써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법적효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청수료가 소송사건에 비하여 월등하게 저렴하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합리적인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및 저작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위원중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반드시 위촉하도록 이 법률에서 규정하였다.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분쟁은 컴퓨터라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문제로서 그 조정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바, 일반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판단이 매우 곤란하여 특허법원등 특수법원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조정위원은 컴퓨터분야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하며, 중립적인 인사로서 조정과 관련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는 등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 운영할 경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벌금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

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종전의 「3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체형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한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③ 프로그램을 허위로 등록한 자등에 대한 벌금을 「1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번에 프로그램법의 개정핵심에 불법복제 행위 근절을 위하여 저작권침해행위자에 대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특히 벌금을 대폭적으로 올렸다고 볼 수 있다.

①의 불법복제, 배포 등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자 또는 불법복제물이란 사정을 알면서 업무에 사용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②의 프로그램복제물을 관리하는 공무원·종업원등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③의 프로그램등록, 복제물의 제출을 허위로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의 벌칙규정중 프로그램업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프로그램법 제21조의 규정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에 있어서 허위로 등록하거나 복제물을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종래의 예에 의하면, 외국산 프로그램을 마치 자기가 창작한 것처럼 등록하고, 실제로 개작등 개작활동을 하지 않고 개작프로그램으로 등록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개요를 지나치게 과장 해서 허위 등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 바 앞으로는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경우는 「3년이하 징역을 살거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거나」그중에 하나로 형벌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이하 징역도 살고 3,000만원이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맺음말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 크게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핵심내용은 불법복제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아서 우리나라 프로그램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프로그램은 돈주고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로 부터 복제해서 쓰는 것이라는 종래의 인식을 크게 바꾸는 의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책방에서 단 1,000원짜리 책을 훔치는 행위는 즉시 절도범으로 구속되고 6개월정도 징역을 살게 된다. 몇십만원짜리 프로그램을 불법복제(일종의 지적재산권의 절취행위)하면서 범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만성적으로 복제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정보화의 실현도 불가능하며, 국제경쟁력의 강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크게 강화된 벌칙규정(3,000만원 벌금)을 비롯한 악의의 최종사용자 처벌제도의 참뜻을 살려서 국민 모두가 불법복제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협조해야 할 것이다.